

# 음주단속과 적법절차

## Crackdown on Drunk Driving and Due Process of Law



정신교

### I. 서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일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인명피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 또한 음주운전은 ‘뺑소니사고’의 주요동기를 제공한다.<sup>2)</sup> 세계 각국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음주운전의 예방과 처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처벌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대체적으로 혈중알콜농도만 기준으로 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운전불안의 상태가 초래되었는가를 고려하는 방식

을 채택하고 있다.<sup>3)</sup>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단속의 시작은 1961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도로교통법에 처음으로 주취운전을 금지하는 조항과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명시되면서 부터이다.<sup>4)</sup> 음주운전 차량 단속은 음주운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심검문의 한 형태로 차량을 정지시키고 검문하는 것은 당연히 적법이나 도로를 차단하고 통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검문하여 음주여부를 단속하는 것이 허용될

정신교 : 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jsk732@hanmail.net, 직장전화:054-420-4104, 직장팩스:054-420-4474

- 1) 2009년도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추세를 보면 총 28,207건이 발생하여 898명이 사망하였고, 50,797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www.police.go.kr): 2006년 주취운전자 중 사고발생이 가장 많은 것은 혈중알콜농도가 0.15%이상 0.19%미만의 상태에서 7,970건이 발생하여 356명이 사망하고 13,225명이 부상당하였으며, 다음으로 0.10%이상 0.14%이하의 상태에서 6,522건이 발생하여 311명이 사망하고 11,073명이 부상하였으며, 그 다음은 0.05%이상 0.09% 이하의 상태에서 4,842건이 발생하여 232명이 사망하고, 8,053명이 부상하였으며, 0.2% 이상 0.25%미만의 상태에서는 5,055건이 발생하여 176명이 사망하고 8,586명이 부상하였으며, 0.25%이상 0.30%미만에서는 1,524건이 발생하여 55명이 사망하였고, 2,596명이 부상하는 등 0.25% 이상에서는 주취정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사망자수, 부상자수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극심한 주취상태에서는 운전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요인분석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중심으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종합분석센터, 2007. 34면 이하).
- 2) H. Janiszewski, *Verkehrstrafrecht*, 4. Aufl., C. H. Beck, 1994, S. 124; 탁희성, “도주차량의 실태와 양형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112면 이하.
- 3) 우리나라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혈중알콜농도와 구체적인 운전불안상태의 초래 등 양자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
- 4) (구)도로교통법 제39조(주취운전금지) ① 운전면허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주취 중에 궤도차 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 중의 한계는 각령으로 정한다.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과연 음주운전자 적발 및 교통사고예방에 효율적인가, 우리나라만 이러한 저급한 마구잡이식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공익은 대단히 중대하고 무작위 음주운전단속 방식이 그 공익을 보호함에 효율적인 수단임에 반해 일제 단속식 음주단속으로 인해 받는 국민의 불이익은 경미하다.”고 판시하고 있다.<sup>5)</sup> 판례도 “음주운전으로 야기될 교통안전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을 미리 방지하는 예방적 행정행위”라고 판시하여 음주측정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sup>6)</sup> 그러면 음주단속을 위한 무작위의 음주측정은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운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단속에 대해서는 감수하고 있으나 오로지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음주로 인한 사고의 방지와 적법한 절차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우리나라 음주단속의 실태와 적법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II. 음주단속의 법적근거와 대상

### 1. 음주단속의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제47조 제1항의 일시정지권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호흡측정요구권은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차를 정지시키고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혐의가 없는 통행차량을 정지시키고 음주 여부를 탐색하는 것은 권력적 경찰조사로서 이는 국민의 신체나 사생활의 비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음주단속은 교통단속을 위하여 실시하는 경찰작용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특히 음주단속을 위하여 음주용의장에서 음주운전 중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정지시키고 음주여부를 파악

하기 위해 소극적인 음주감지기를 사용하는 것은 경찰기관이 도로교통 안전의 목적달성을 위한 일종의 경찰조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찰조사는 어떠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적행위가 아니라 그 준비단계로서 행하여지는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경찰작용에 의하여 얻게 된 정보 또는 자료가 곧 조사대상자의 범죄행위의 증거가 되어 수사단서로서 사법목적에 유용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사활동 전의 직무행위로서 특정된 범죄에 관한 것이 아니다.

### 1)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는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를 위해 경찰의 직무범죄를 규정함과 동시에 경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규정이다. 따라서 임의수단에 의한 합리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차량을 무차별적으로 검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동법 제2조의 규정은 조직법상의 규정이며, 개별적인 경찰활동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은 단지 동법 제2조의 확인규정에 지나지 않게 되어 개개의 경찰활동에 대한 수권규정의 존재의의 그 자체를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불심검문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에게 수권하고 있는 바, 이 불심검문의 전제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권한도 동조의 규정을 확장 해석하여 인정된다고 한다.

### 2)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47조의 일시정지에 관한 규정은

5) 헌법재판소 2004. 1. 29. 2002헌마293 전원재판부.

6)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도2172판결.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과로·질병·약물 운전 등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차를 일시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44조(주취중 운전금지)의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음주검문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단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의 구체적 요건으로 첫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음주운전자가 많은 유흥가 등 적당한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하며(합리성), 둘째, 차량이용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법과 수단에 의해 행하여져야 한다(비례성). 그러나 여기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란 당해 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구체적인 위험성은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을 당시에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 규정은 일단 음주운전 혐의자가 발견된 경우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으로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그 전단계인 음주검문의 법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즉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게 계속적으로 운전케 하는 것은 구체적인 교통안전 위해가능성이 크므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더라도 더 이상 음주운전 행위가 없을 경우에는 음주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규정한 조항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술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별표 28) 면허행정처분 기준의 취소처분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②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③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등이다. 그리고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0.1%미만의 경우 운전면허 100일의 정지처분이 내려진다.

###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처벌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 2. 음주운전 단속대상

단속대상차량은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을 포함하여 총 26종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굴삭기·지게차 등을 포함되고, 자전거·우마차·손수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sup>7)</sup> 주취운전의 주체는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운전자이다. 따라서 단순음주운전자, 음주운전 사고야기자, 체혈요구자, 음주측정거부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취운전은 ‘도로’에서 주취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어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고 통행이 자유로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는 단속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구획선 안의 경우는 제외된다. 또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장을 막 벗어나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도 물론 주취운전에 해당한다.

7) 음주나 약물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자동차,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 건설기계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문제가 제기되는 운전은 운전면허가 요구되는 자동차등이라 할 것이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 자동차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건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다만 배기량 125 cc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동법 제2조 제15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배기량 125 cc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50 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위 자동차의 개념에 속하는 것은 모두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요구되는 것이며 동조는 그 외에도 배기량 125 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하여도 운전면허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시키기 위해 ‘자동차 등’이라고 표기하였다.

### III. 음주단속에 있어서 적법절차 확립

#### 1. 수사기관의 음주단속 처리 실태

##### 1) 경찰의 음주단속 처리실태

행정기관에 의한 면허취소나 정지처분은 운전자에게 있어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특히 차량운전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자에게 면허정지나 취소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신청 여부와 면허취소(정지) 여부가 혈중 알콜농도의 구체적 수치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있어서 혈중알콜농도의 정확한 측정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0% 미만은 경한 정도로, 0.10% 이상 0.15% 미만은 보통 정도로, 0.15% 이상의 경우는 중한 정도로 취급되면, 0.30%를 초과하는 경우는 특별히 중한 정도로 간주되고 있다.

경찰단계에서의 개입은 주취운전 단속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지침은 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② 주취운전자 단속처리 ③ 음주측정기 및 측정기록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 1〉 경찰의 음주단속 처리지침

결과 \ 알콜농도	0.05%-0.1%미만	0.1%이상	구속영장신청기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변적)
단순음주 대물사고	형사입건, 면허정지(100일)	형사입건 면허취소	0.05%이상:3회이상, 뇌물공여자 0.36%이상: 사고유무(경중)불문
대인사고	형사입건 면허취소	형사입건 면허취소	0.16%이상: 중상사고 0.26%이상: 경상사고

〈표 2〉 검찰의 음주단속 처리지침

측정치	형벌	행정처분	결격기간
0.05-0.09	불구속입건	면허 100일 정지, 벌점 100점	
0.1이상	불구속입건	면허취소	1년
0.36이상	영장청구(구속수사)	면허취소	1년
0.05이상	5년내 3회이상 동종전력자(구속수사)	면허취소	1년
0.15이상	3년내 2회이상 동종전력자(구속수사)		1년
0.15이상	무면허운전자(구속수사)		2년

##### 2) 검찰의 음주단속 처리실태

검찰에서는 경찰의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음주운전과 음주교통사고로 나누어 각각의 지침을 마련해놓고 있다. 단순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과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기준은 아래와 같다.

서울중앙지검의 교통사범의 구속기준은 ① 혈중알콜농도 0.36% 이상, ② 0.15% 이상으로서 3년 이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경력자로서 최근 1년 이내 음주운전 처벌경력이 있는 자, ③ 5톤 이상 화물차, 20인승 이상 버스는 혈중알콜농도 0.10%이상으로 기준강화, ④ 최근 2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상당기간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단 대형차량은 상당기간 음주측정 거부만으로 구속) 등이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소위 '3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3년 이내에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이고 최근 1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검찰의 지침을 말한다.

#### 2. 음주단속의 적법절차의 개선방안

##### 1) 음주단속과 비례의 원칙

음주단속의 법적 근거가 일반조항에 의하는가

아니면 개별법에 의하는가에 관계없이 일반 국민의 감정에 기본권의 침해로 느껴지거나 저항을 느끼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음주단속의 법적 근거의 유무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경찰작용으로서의 음주단속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의 침해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우리 헌법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음주단속에 있어서 선별적이고 예방적 차원이 아닌 무분별하고 단속실적위주의 단속이 된다면 이 또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8)</sup> 이 경우 경찰이 달성하려고 하는 이익과 침해되는 당사자의 이익을 깊이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sup>9)</sup>

여기서 고려되는 것이 경찰작용의 조리상의 원칙으로 경찰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다. 따라서 음주단속과 관련하여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 경찰권 발동에 관한 제2차적 한계 또는 조건으로서 경찰비례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음주단속의 운영지침이 검토되어야 한다. 미국<sup>10)</sup>과 일본<sup>11)</sup>의 경우 음주단속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교통단속처리지침을 통하여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음주단속 처리지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우리나라의 음주단속지침

1991년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sup>12)</sup> 경찰은 다시 1999년 5월 '주취운전단속처리 및 음주측정기사용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음주측정기의 오차가능성을 대비하여 최종 혈중알콜농도를 어떻게 결정

할 것인가, 또 측정거부의 요건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3인 이상의 경찰관의 협동단속 및 경사이상의 경찰관의 현장감독, 집중단속 등 주취운전자 단속시 기기 사용요령 및 측정시 주의사항 등 필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양, 음주운전자의 정황을 상세히 작성하여 수사 자료로 확보하는 것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006년 경찰청은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정하여 도로에서의 교통 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공정성·정확성·능률성을 제고하고 있다.

## 3) 음주단속 적법절차의 개선방안

현행 음주단속의 법적근거는 도로교통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단속과 기본권침해사이의 비례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음주운전금지라는 일반예방효과,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체포위험성의 경고, 음주운전자 적발 및 기타 교통위반행위에 대한 간접적 경고 및 권리에 대해 간과하고 있고 음주운전자의 적발에만 중점을 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음주 단속시 교통경찰관의 안전에 대한 고려도 미흡하다. 그러므로 관계기관은 먼저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에 대한 일반의 예방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을 상대로 음주운전의 해악성에 대한 홍보 강화와 교통안전교육이 동반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음주단속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단속방법, 음주운전자 발견시의 조치요령의 통일, 음주단속의 위치선정에 있어서도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와 기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일 것이 요구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자 다수가 통과하는 용의 장소 또는 음주사

8) 정신교, 음주운전과 강제체혈, 교통기술과 정책, 제6권 제4호, 2009, 74면 이하.

9) 이재상, 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09, 184면 이하; 권오걸,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10, 193면 이하.

10) 미연방대법원의 Michigan dept. of state v. Sitz 판결을 보면 음주단속 운영지침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검문소의 위치, 대중에 대한 홍보방안과 운영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The Use of Safety Checkpoint for DWI Enforcement, DOT HS-806-476, Sep. 1983).

11) 일본은 음주단속에 대해 소화 55년 최고재판소에서 음주단속의 적법성을 인정했다(最高裁 昭和 55年 9月 22日 第三小法廷決定(昭和53年 1717號 道路交通法違反被告事件))

12) 내무부 교지 02636-2966(1991. 4. 3) 제목: 음주운전 단속 처리지침 제정 시달(통보).

고 다발장소를 과학적 통계에 근거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차량이 많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차로를 막아놓고 음주단속을 함으로써 주변의 교통정체를 야기하거나, 일선 경찰관들의 감에 의한 검문위치선정이 이루어진다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음주단속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음주단속이 헌법상 원칙인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음주단속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지침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 IV. 결론

교통단속은 경찰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교통검문시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경찰관 사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차량의 정지를 유도하는 기자재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음주단속은 혐의사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의 일종으로 허용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일반직무규정이 경찰 활동의 근거로 되는 수권규정은 아니므로 음주검문의 법적근거로 될 수 없고, 차량운전자에게 부담이 부과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도로교통법상의 여러 종류의 단속규정이 정하는 '부담'에 진력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그것을 넘어 검문예의 '협력의무'를 끄집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음주단속은 통행인의 의사 내지 행동의 자유에 간섭해서 제약을 가하는 성질의 경찰활동임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임의수단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결국 현행법상 법률로서의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찰활동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직무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명문의 절차규정을 설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설사 임의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권리나 이익에 관련한 때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1. 경찰청(www.police.go.kr).
2. 권오걸,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10.
3.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요인분석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종합분석센터, 2007.
4. 대검찰청(www.spo.go.kr).
5.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9.
6. 정신교,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일감법학, 제14호, 건국대 법학연구소, 2008.
7. 정신교, “음주운전과 강제체혈, 교통기술과 정책, 제6권 제4호, 2009.
8. 탁희성, “도주차량의 실태와 양형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9. H. Janiszewski, Verkehrsstrafrect, 4. Aufl., C. H. Beck, 1994.